

## 제 4 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 제 4.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 나. 양 당사국의 관세 법, 규정 및 행정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을 보장한다.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 제 4.2 조 투명성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와 관행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 2.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 법과 규정 및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 상에 공표한다.
-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관세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하고,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4.3 조 서류와 자료요소의 조화

-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와 자료요소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조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 2.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자료요소와 처리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3.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

터 요건을 조화시키고,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시키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제 4.4 조 종이없는 무역 환경 내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각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각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 4.5 조 위험관리

통관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각 관세행정기관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 제 4.6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가능한 한도에서,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상황에서, 특정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진 선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 4.7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sup>5</sup>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는

가.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상세설명을 포함한다.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상품의 견본과 같이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관련 정보에 기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사전심사결정이 신속하게, 그리고 자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내려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심사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서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거부 판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과 제5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

---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 5년 이상 또는 발급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결정에 명시된 다른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5.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경우 이 협정과 합치하게 사전 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 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주지 아니한 경우
- 다. 중요한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또는
- 라.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6. 발급 당사국은,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 제 4.8 조 불복청구 절차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 나.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한다.

- 가. 원산지 결정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신청한 인, 또는
- 나.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3.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자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제 4.9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각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관세 사안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포함한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전문기술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협정의 이행과 운영
  -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협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4.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통관 절차의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발의된 법, 규정 또는 정책에 대한 사전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및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관세 법과 규정의 위반을 조사하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정보의 교환을 위해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교환한다.

#### 제 4.10 조 양자 관세협의

1. 각 관세행정기관은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과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안과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는 다른 무역원활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검토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 제 4.11 조 비밀유지

1. 제22.4조(정보의 공개) 및 제22.5조(비밀유지)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달리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러한 다른 사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 받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정보를 받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정보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3.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개인 경우,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자국의 법,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판정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 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의 금융 거래 및 계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자국의 모든 법, 규정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 다. 법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 제 4.12 조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특히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고려함으로써, 이 장 또는 제3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해결한다.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 제 4.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이란 이 협정의 범위와 관계없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